

교원 징계위원회 규정

□ 제정 : 1998. 5.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고운학원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 설치한 교원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위원장의 선출 및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의 회무를 통리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징계의결의 기한) 위원회가 징계의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제척)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 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6조(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일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7조(징계의결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하고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기재한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이를 임면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임면권자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면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④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징계의결시의 정상참작 등)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근무성적·공적·개전의 정·징계요구의 내용·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1조(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본교 소속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13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